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윤태영 (경남대학교 교수)

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보 위기관리체계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로 확립되면, 위기에방, 위기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적 위협과 위기에 대해 새로운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전략적 통제와 협의체제, 군사 작전통제체제, 위기관리 절차제도, 위기조치계획, 정보와 정보체제 등 분야에서 협의·조정 기구의 설치와 제도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된 위기관리지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기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압외교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나 온건한 외교정책을 보완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해 유용성이 있는 강압외교가 효과적으로 구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의 이익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제한된 군사력 위협, 제재 및 유인조치를 통한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8. 14) 발표자료임.

목 차

- 1. 서론
 - 가. 문제제기
- 2.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체계
 - 가. 현 정부의 위기관리체계
 - 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체제 구축방향
 - 나. 한·미 연합위기관리 체제 발전방향
- 4.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전략
 - 가. 강압외교전략
 - 나. 한·미 동맹의 대북 강압외교 분석 및 발전방향
- 5. 결론

1. 서론

가. 문제제기

- 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인 복합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위기관리전략의 개발은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임.
-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불확실성 및 긴급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기 상황 시 평화적 해결과 대결의 승리 사이에서 원치 않는 위기 확대와 침해된 국가이익의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임.
 -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위기 시 정치적 수완의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전략에서 어떻게 강압과 온건조치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가, 즉 전쟁의 회피와 이익 극대화 또는 손실의 최소화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음.¹⁾
 - 위기 상황 시 ‘위협공유’와 ‘상호경쟁’ 요인이 내재된 상황 속에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을 통한 정치·외교 및 군사적 조치의 적절한 균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수집·분석, 위기정책결정, 위기 시 대화와 의도 전달, 군사력 지휘통제 및 동맹국과의 협조 등이 핵심사안임.
- 특히 군사적 위기 발생 시 위기 확대 위험과 국익의 보호·증진이라는 상충되는 요인이 내재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위기정책 결정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기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함.
 - 정치·외교적 조치와 더불어 위기관리를 위한 군사력의 지휘통제는 침해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임.
 - 이러한 위기관리 임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예상치 못한 우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발전시키고,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분쟁의 확대나 전쟁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찾기 위함임.
- 정책결정자들은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정책적 딜레마인 전쟁을 유발

하지 않고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의 특질에 적절히 부합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함.

- 위기관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 선택은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기에, 효과적인 위기관리전략의 선택을 위해서는 정책적 딜레마를 고려하면서 상황에 적합한 군사·외교적 조치의 적절한 배합 또는 균형을 모색해야 함.
- 한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및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효과적인 위기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1978년 11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창설 이후,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정책 조정 및 협의, 전·평시 작전통제체제, 방어준비태세(DEFCON), 정보공유, 정보감시태세(WATCHCON) 등의 측면에서 연합군사령부의 한·미 연합위기관리체계와 절차로 통합되어 수행되어 왔음.
 - 이후 1994년 12월 1일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로 이양되었고, 2007년 한미는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5년 출범할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지원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 기존의 연합위기관리체계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기존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이원화, 한·미 간 통합된 연합위기 관리 조치와 절차 및 정보 및 조기경보의 과도한 대미 의존 등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한·미 위기관리체제로 변화될 예정임.
- 본 발제문에서는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의 위기관리전략 중에서 강압외교 전략의 대북 적용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인
복합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위기관리전략의 개발은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NSC

체제를 대폭

축소·개편하였음

2.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체계²⁾

가. 현 정부의 위기관리체계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정부조직과 대통령실을 개편하였음. 아울러 2008년 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의 NSC 체제를 대폭 축소·개편하였음.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존속시키되 1998년 설치되었던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하였고, 사무처의 기능은 대통령실장 산하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로 이관하였음.
 - 2008년 3월 7일에는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여 외교안보정책 및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함. ‘조정회의’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하며, 필요 시 관계부처의 장관 및 대통령실의 관계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함. 조정회의의 간사는 외교안보수석으로 하고, 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였음.
 - ‘실무조정회의’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외교안보수석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의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조정회의의 의제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한편 긴급현안 발생 시 대통령이 소집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임시 회의체의 성격으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등이 참석함.
-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의 위기관리센터를 축소·개편하여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한시적 성격의 ‘위기정보상황팀’을 15명으로 구성하고 팀장(2급 선임행정관) 산하에 분석반과 상황반을 설치하였음.
 -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발생 시 위기정보상황팀의 느장보고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7월 22일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외교안보수석이 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산하에 국가위기상황팀을 두고 팀장을 비서관급으로 격상시킴.
 -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동시에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내용을 통보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 및 긴급 수석회의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

-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시 위기사건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과 총체적 위기관리체계 부재 문제가 발생하여 위기관리체계는 또다시 개편되어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였음.
 -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 안보특보의 관장하에 비서관급의 별도기구로 분리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춘.
 - 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위기 상황 전파가 주된 임무였으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산하에 위기 상황 접수 및 전파를 담당하는 ‘안보상황관리팀’과 위기진단 및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운영팀’을 설치함.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12월 1일 청와대는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함.
 -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 시 초기대응지휘 및 평시 위기대비체계 점검·강화를 주업무로 하는 위기관리비서관실, 각종 상황 및 주요 정보의 분석을 전담할 정보분석비서관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상황실로 구성됨.
 - NSC는 또한 대통령실 내 안보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전담하며, 외교안보정책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함.
 -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 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며, 위기 발생 시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조정됨.³⁾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는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함**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였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를 타위가 부재함**

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첫째, NSC 회의체와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였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를 타위의 부재 문제.
 - 현재의 위기관리체계에서는 대폭 축소된 NSC 본회의, 위기관리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외교안보수석실 등이 관여하게 되어 컨트를 타위 부재가 나타남.⁴⁾
 - NSC 본회의는 유지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를 대체해서 대통령령 제245호에 의거하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였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통합적인 안보 업무를 총괄하여 협의·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비공식적이고 임시 회의체 성격으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업무가 중첩되어 있으며 부처별 위기관리대책을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대응 협의 이상의 통합된 위기인지, 정보분석, 위기평가, 위기조치 검토 및 결정 등 총체적 위기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회의체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함.
 - 이를 위해 중복된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폐지하고 NSC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고 제도화된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설치하여 위기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⁵⁾
 - 미국의 경우 NSC 산하에 장관급위원회(NSC/PC), 차관급위원회(NSC/DC) 및 부처간정책위원회(NSC/IPCs)를 운영하며, 차관급위원회가 위기관리를 전담하고 부처간정책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여, 부처간정책위원회가 부처별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둘째,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가위기관리실’의 신설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NSC 사무처를 부활하여 그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실을 편입시켜 NSC 회의체 내에서 위기관리지침 하달과 위기정책결정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위기관리실 인력운용은 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의 인력이 1~2년 단위 파견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할 인력운용 시스템이 필요함.⁶⁾
 - 국가위기관리실 구성원들은 위기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위기 상황과 유사한 위기 시뮬레이션의 실시를 통해 행동지침, 위기관리절차 및 실행계획을 숙지하고 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국가위기관리실이 위기 상황 전파뿐만 아니라 NSC 회의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조기경보, 위기정보 분석·통합, 위기평가, 위기조치방안 검토 및 조정, 위기조치수행에 관한 모니터, 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 위기관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함.
-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시설의 현대화와 상황실 내 정보망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함.
 - 국가위기관리실의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CMC)와 1961년부터 NSC 사무처 산하에 운영 중인 ‘백악관 상황실(White House Situation Room)’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넷째, 2004년 대통령훈령 제124호로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에 국가위기관리법으로 제정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조직·자원·조치 및 기능 등 위기관리 요소들이 통합성·협력성·유기성·표준성·연계성에 입각한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⁷⁾
- 다섯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위기징후목록의 지속적 보강·정비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문제.⁸⁾
- 천안함 사건 당시, 이전 정부 당시 제정된 ‘주변해역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이 있었으나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부처 이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음.
 - 현재 안보 분야는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실이, 일반 재난 분야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가 분리해서 관리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위기관리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아울러 비전통적·비대칭적 안보위협 환경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유형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작성해야 함.

**NSC 사무처를
부활하여 그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실을
편입시켜 NSC 회의체
내에서 위기관리지침
하달과 위기정책결정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미 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
변화될 것임

3.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⁹⁾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체제 구축방향

- 현행 연합위기관리체제
 - 1978년 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 연합위기조치계획은 미 합참의 Joint Pub 5-03.1에 규정된 ‘위기조치계획절차(Crisis Action Planning Procedures)’에 의거하여 연합군사령부에서 작성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위기조치예규(CASOP: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에 따름.
 - 연합군사령관은 양국의 합참에 위기평가 및 조치사항, 방책계획 및 건의사항을 보고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시행함.
 - 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는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기조치반’과 ‘위기조치계획반’을 운영함.
 - 연합군사령부의 위기조치절차는 위기 시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을 통해 1단계(상황전개) → 2단계(위기평가) → 3단계(방책발전) → 4단계(방책선정) → 5단계(시행계획) → 6단계(시행)로 전개됨.
- 2015년 구축될 한·미 신연합방위체제는 전략적인 수준에서 기존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를 유지하면서 한국 합참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체제임.
 -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Alliance Military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는 물론 동맹관리를 위해 운용할 예정임.
- 한·미 연합군사령부(CFC)가 해체되는 대신 전구작전 수준에서는 한국군은 합참의장이 사령관으로 겸직하는 ‘한국합동군사령부(KJFC: Korea Joint Forces Command)’를 창설하고, 미국은 긴밀한 군사협조를 위해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 현재 주한미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한 명칭임)’를 설치하여 한·미 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 변화됨.
 - 이에 따라 한국의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라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2개의 전구급 전투사령부 사이에 전기능·전제대별 강력한 군사협조기구가 편성되어 지속적인

작전협조가 보장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

- 전구작전적 수준에서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 간에 연합 공군사령부(CAC: Combined Airforce Command),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CWIOC: Combined Warning and Intelligence Operation Center), 연합작전협조단(COCCG: Combined Operations Coordination Group), 작전계획 5015 협조본부, 통합기획참모단(IPS: Integrated Planning Staff Group), 연합군수협조단(CLCC: Combined Logistics Coordination Center), 연합 지휘통제체계협조단(CC4ICC: Combined C4I Coordination Center), 다국적협조본부(MNCC),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전장협조단(JBCG) 등 한·미 간 전구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와 전투참모단, 협조반 등 연합 협조기구들이 평시부터 상설기구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 공군의 경우 오산 기지에는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사령관으로 겸직하고 있는 공군구성군사령부가 있는데, 이 사령부를 확대 개편해 연합공군사령부(CAC)가 오산에 창설될 예정이며, 연합공군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게 될 예정이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의 합참의장이 모든 작전권을 행사하게 됨. 단, 공군의 경우 한국 공군의 역부족으로 사령관을 미군이 맡게 되나, 한국 공군이 준비가 되었을 때 공군지휘권도 전환될 예정이다.

나. 한·미 연합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 첫째, 전략적·정책적 차원과 작전적 차원에서의 한·미 위기관리기구를 설치.
 - 전략적·정책적 수준에서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내에, 작전적 수준에서는 연합작전협조단(COCCG)에 위기관리 부서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는 전구사령부 간의 협조업무가 주임무로 연락, 상황전파 및 의견 절충을 수행하나, 위기 시 기존 연합군사령부체계 수준과 유사한 위기관리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원활하고 공고한 위기대화채널 구축 및 위기관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조직 설치와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임.

**전략적·정책적 차원과
작전적 차원에서의
한·미 위기관리기구
설치 고려해야**

**한국군의 주도적
위기관리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와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제대별로
전술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전력
개발도 시급**

- 둘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연합합동교리발전,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항의 개정이 필요함.
 - 현재 한국군은 평시에 부대이동, 경계, 초계, 합동전술훈련, 대비태세 강화 등 부대 운영에 대한 권한만 규정되어 있어 합참의장이 군사적 보복조치에 관한 주도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CODA 6개항을 위임받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음.
- 셋째, 한국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정전협정, 정전 시 교전규칙, 위기조치예규 및 작전예규 등을 검토하여 한국군 단독 위기관리 규정을 수립해야 할 것임. 아울러 현행 한·미 간 ‘연합위기관리 합의각서(CCMOA: Combined Crisis Management of Agreement)’ 개정을 추진하고,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미국 측의 위기조치예규와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¹⁰⁾
 - 연합군사령부 위기조치예규(CASOP)를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간의 ‘공동위기조치예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미는 2010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기획지침(SPG)과 국방협력지침(DCD) 수립에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벤치마킹하여 한·미 간 위기관리협력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NATO에서 운영 중인 예방방안, 위기대응조치, 대 기습작전, 대 침공작전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체계(NCRS)지침과 유사한 위기관리지침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넷째, 한국군의 주도적 위기관리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와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제대별로 전술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전력 개발도 시급한 사안임.
 - 이를 위해 전략적 수준의 감시와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과 아울러 사단의 감시·정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정찰용무인기 개발을 추진해야 함.
 - 한·미는 위기대응 정보·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NATO가 운영 중인 정보·경보체계(NIWS)와 NATO 상황센터(SITCEN)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위기확인, 핵심 징후 파악, 징후 모니터를 위한 정보활동, 경보 분석·판단 및 정보 교환·전파 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간 C4I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연동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군의 통합 C4I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n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와 연합군사령부 C4I 체계인 ‘범세계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 Combined Enterprise Regional Information Exchange-Korea)’ 간의 상호운용성과 연동은 한·미군의 공동 위기 조치를 위한 핵심적 사항임.
 - 한·미는 NATO에서 운영 중인 NATO의 협의지휘통제 기구인 협의·지휘·통제이사회(NC3B)와 협의·지휘·통제참모부(NHQC3S) 등과 유사한 기구를 검토하여 공동 협의·지휘·통제 소요, 상호운용성, 주파수 관리, 정보체계, 정보보안체계, 통신망, 식별, 항해 등의 임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NATO 협의지휘통제국(NC3A)과 통신·정보체계 지원국(NCSA)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정보, 감시, 정찰, 공중 지휘통제, 전구 미사일 방어, 전자전,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 등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전략¹⁾

가. 강압외교전략

- 조지(Alexander L. George)는 강압외교를 “적대국이 이미 시작한 침략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력 위협 또는 상당히 제한된 군사력 증강을 구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강압외교는 적대국에게 요구에 순응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을 모색하도록 합리적 설득 및 유인과 함께 강압적 위협을 통한 유연한 외교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어전략이라고 주장함.
 - 조지는 강압외교전략을 적대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적극적 유인(positive inducements) 및 보장(assurances)뿐만 아니라 응징위협(punitive threats)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설명함.
 - 강압외교는 적대국이 강압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적 위협을 강조하며, 만약 무력이 사용될 경우 적대국이 후퇴 또는 순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의 ‘경고적’ 또는 ‘상징적’ 사용을 구사함.
 - 즉, 강압외교는 군사력의 준비태세, 전개 및 행동을 통한 의사전달,

강압외교는 적대국에게 요구에 순응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을 모색하도록 합리적 설득 및 유인과 함께 강압적 위협을 통한 유연한 외교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어전략

**당근과 채찍 접근에
기반한 강압외교는
유연하고 유용성이
있는 반면, 저항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적대국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적용이
어려운 전략**

흥정, 그리고 협상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정치·외교적 전략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¹²⁾

- 강압외교의 역동적 경합과 역강압 문제
 - 당근과 채찍 접근에 기반한 강압외교는 유연하고 유용성이 있는 반면, 저항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적대국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적용이 어려운 전략임.
 - 강압외교는 역동적 복수참여 간의 역동적 경합으로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과 행동 자체에 근거해 자국의 움직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안보환경의 변화에 근거한 행위를 일련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협상을 요구하여 강압국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강압국에 위협을 부과하려는 역강압 행동이 나타난다면 강압외교의 성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강압외교의 성공적 조건
 - 조지는 성공적인 강압외교를 위해 강압국이 적대국에게 인식되도록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조건으로는 ① 동기의 비대칭과 유인 조치, ② 강압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긴박감, ③ 비순응 시 적대국이 감당할 수 없는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함.¹³⁾
 - 바이먼·웁스먼(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은 성공적인 강압이 이루어지기 위한 2가지 조건으로 첫째, 상대의 압박점(상대에게 취약한 영역이고, 상대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영역)을 찾아 위협해야 함. 둘째, 강압국이 확전의 우위를 지킬 때, 즉 상대에게 가해지는 위협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상대가 위협비용을 상쇄하거나 역으로 강압국에게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을 때 강압의 성공률이 높다고 설명함.¹⁴⁾

나. 한·미 동맹의 대북 강압외교 분석 및 발전방향

- 북한의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및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한·미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를 통한 강압외교로 대응하였고,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한 역강압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음.

- 한·미 동맹의 대북 강압외교 적용을 통해서 보면 강압외교에 내재된 한계와 북한의 역강압으로 인해 강압외교의 효과가 잠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군사력과 제재 및 유인조치를 통해 유화정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미의 강압외교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효적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동기의 비대칭과 유인조치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국의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 사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북한에 대해 동기의 비대칭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 현재 한·미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은 이미 2차례의 핵실험을 한 상태로 미국과 핵군축을 주장하는 상황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북한에게 핵무장 없이도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인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북핵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PSI의 강화와 함께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조치도 개발해야 할 것임.¹⁵⁾

- 둘째, 강압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긴박감과 관련 북한의 역강압행태로 볼 때, 정치·군사적 부담과 비용이 큰 최후통첩 방식보다는 명시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순응 여부에 따른 추가수단이 가능한 ‘시도 후 주시’ 전략 또는 압박의 강도를 점차로 증가시키는 ‘점진적 압박’ 전략이 유용함.
 - 유엔과 한·미의 맞춤형 제재가 장기화되면 2005~2007년 방코텔 타아시아(BDA) 제재 효과에서 보듯이 북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맞춤형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목적이 체제변화나 정권봉괴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군사도발 억제 및 적대적 정책의 변화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비순응 시 적대국이 감당할 수 없는 확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응징 경고와 함께 정치적 목적달성을 거부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외교의 적용 시 비례성, 상호성,

**북한의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및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한·미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를 통한
강압외교로
대응하였고,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한
역강압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음**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보 위기관리체계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켜야 함**

신뢰성을 기반으로 신중히 계산된 군사력 전개의 효과적 운용이 요구됨.

- 특히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장사정포 및 특수전 등 비대칭적 수단을 통한 위협을 가할 때 대응하기 위한 전력과 대비책이 필요함.
- 아울러 견고한 한·미 동맹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보, 미사일 방어의 지원을 받으며, 한반도 위기 시 북한이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 미 항모전단의 제한된 무력시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북한의 역강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바이먼·웁스먼이 주장하는 “적국에게 위협비용을 증대시키면서도 적국이 이에 대한 방어나 반격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확전우세’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할 것임.

- 한·미는 공고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핵우산 지원하에 북한의 비대칭적 공격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공격력보다 북한에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응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에게 북한의 추가적 군사도발이 동북아 안정에 저해요인임을 인식시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을 동참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5. 결론

○ 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보 위기관리체계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켜야 함.

○ 현 정부에서는 NSC 체제를 대폭 축소·개편하고 몇 차례에 걸친 위기관리 조직의 개편으로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로 확립되면 작전통제체제는 연합이 아닌 병렬형체제로 구축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치·전략적 통제와 협의체제, 군사 작전통제체제, 위기관리 절차제도, 위기조치계획, 정보와 경보체제 등 분야에서 협의·조정 기구의 설치와 제도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된 ‘연합위기관리 합의각서’와 ‘공동위기조치예규’ 등 위기관리지침이 완비되어야 할 것임.
 - 위기예방, 위기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적 위협과 위기에 대해 새로운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한·미 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일의 공동 위기관리체제와 작전적 측면에서 연합적 위기관리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NATO 위기관리체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한·미의 강압외교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나, 온건한 외교정책을 보완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해 유용성이 있는 강압외교가 효과적으로 구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의 이익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한된 군사력 위협, 제재 및 유인조치를 통한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신뢰성 있는 무력 위협, 한·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북한의 인식 창출, 북한의 순응 이후 한·미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및 북한의 역강압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확전우세 전력의 확보가 핵심요소임.
 - 또한 북한이 한·미 동맹의 핵개발 포기 및 호전적 군사행동의 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유인책의 제공도 핵심요소임.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이지영(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윤태영

現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영국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2011~2012)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Trilateralism and Beyond*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위기관리를 위한 교전규칙의 역할과 고려사항”,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조직, 정책 및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외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와 정책: 김선일 피살사건을 중심으로” 등이 있음.

* 이 발제문은 필자의 연구논문과 기타 주요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학술논문 형식의 글이 아니므로 대표적인 출처 이외의 세부적인 출처에 대한 각주는 생략하였음을 밝힙니다.

주석

- 1)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10.
- 2) 윤태영,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체제 조직과 운영: 위기관리 시각에서 분석,”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2010), pp. 244-247 요약.
- 3) 청와대,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청와대,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장 신설,”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olicy_view.php?uno=9507 (검색일: 2012.7.30).
- 4) 정찬권, “제2의 연평도 막으려면 위기관리 체계 전면 손질해야,” 『월간조선』, 2011년 12월호, p. 2,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nNewsNumb=201112100059&ctcd=> (검색일: 2012.7.30); 『조선일보』, 2012.3.24.
- 5) 이인호 외,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 모델,” 2009년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연구용역보고서, p. 100 참고.
- 6) 정찬권(2011), p. 2.
- 7) 김열수 외, “비상대비 관련법령 정비방안,” 2011 행정안전부 용역과제, 2011.6, pp. 46, 87.
-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10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2010.10, p. 215.
- 9) 윤태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계 변화양상과 발전방안: 한·미 동맹, 미·일동맹 및 NATO 위기관리체계 비교연구,” 『국제문제연구』, Vol. 11, No. 42 (2011 여름호), pp. 7-11, 25-27 요약.
- 10)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1.12.6, p. 34 참고.
- 11) 윤태영, “강압외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한·미 동맹의 대북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통권 173호 (2012년 여름), pp. 41-42, 45-48, 58-60 요약.
- 12)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 Westview Press, 1991), pp. 17, 384;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1), pp. 5, 10; Alexander L. George, and William E. Simon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2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7, 10.
- 13) George and Simon(1994), pp. 280-287; George(1991), *Forceful Persuasion*, pp. 10, 77.
- 14)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30.
- 15)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대북 정책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난 상황을 인정하고 북한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과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중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Henry A. Kissinger,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http://www.henryakissinger.com/articles/iht060409.html> (검색일: 2012.8.1).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1.12.6.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10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2010.10.
- 김열수 외, “비상대비 관련법령 정비방안,” 2011 행정안전부 용역과제, 2011.6.
- 윤태영,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 조직과 운영: 위기관리 시각에서 분석,”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2010).
- _____,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변화양상과 발전방안: 한·미 동맹, 미·일동맹 및 NATO 위기관리체제 비교연구,” 『국제문제연구』, Vol. 11, No.42 (2011 여름호).
- _____, “강압외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한·미 동맹의 대북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통권 173호 (2012년 여름).
- 이인호 외,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 모델,” 2009년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연구용역보고서.
- 정찬권, “제2의 연평도 막으려면 위기관리 체계 전면 손질해야,” 『월간조선』, 2011년 12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nNewsNumb=201112100059&ctcd=> (검색일: 2012.7.30).
- 청와대,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청와대,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장 신설,”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olicy_view.php?uno=9507 (검색일: 2012.7.30).
- Byman, Daniel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George, Alexander L.(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_____, Alexander L.,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1).
- _____, Alexander L. and William E. Simon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2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Kissinger, Henry A.,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http://www.henryakissinger.com/articles/iht060409.html> (검색일: 2012.2.4).
- Snyder, Glenn H.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에 초대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2001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 외교·안보·경제·환경·여성·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회 그 규모와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종합포럼입니다.

2013년 5월 개최 예정인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주 관 제주평화연구원
- 일시 및 장소 2013년 5월 29일(수)~31일(금), 제주도

2012
05.31-06.0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김황식 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한승수 전 총리,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석

2011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총리,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2009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2007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2005
06.09-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첸치첸 전 중국 부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2003
10.30-11.01

제2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2002
04.12-13

세미 제주평화포럼

“21세기 세계 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2001
06.15-17

제1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T. +82 (0)64 735 6531 | F. +82 (0)64 738 6539 | E-mail. jejuforum@jpi.or.kr

www.jejuforum.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